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2. 10. 9. (제 197 회)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산림축산과)
제출 연월일	2012. 09. .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규정(제6조)  
(대상시설 : 숙박시설, 세미나실, 주차장, 야영장)
- 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시 처리 규정(제7조)
  - 예약 성립시점, 취소시 반환기준, 위약금 예외규정
- 수입금의 처리 규정(제10조)
  - 운영 수입의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처리 규정
-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제11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위탁관리 규정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다. 예산관련 사항 : 비용추계서
- 라. 기타 참고자료 :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산림축산과	
연 락 처	(054) 950-6315

## 고령군 조례 제 호

### 고령군 미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승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 고령군 내의 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과 부대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고령군 미승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고령군 미승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미승산 자연휴양림 고시지구로 한다.

제4조(휴양림 이용의 통제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개·보수 시
2. 휴양림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휴양림내 자연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휴양림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출입제한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3. 위험물 및 악취물 반입 및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4. 임지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 채취 및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
5. 애완동물과 동행입장 및 애완동물을 목줄 없이 방치하는 행위
6. 불법 상행위를 하는 행위
7. 휴양림 이용목적외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출입행위
8.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시설사용료) ① 군수는 휴양림시설 사용자로 부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관련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령군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설사용료 등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현금징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 예약은 납부기간 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의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자 행위제한 등의 게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행위 제한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송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

**1. 야영장 및 숙박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 중	성수기 및 주말	
야영장	야영데크		1일/1조	6,000		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바 닥		1일/1개소	2,000		
숙박시설 (숲속의집)	33.3㎡형	4인기준	1일/1동	50,000	70,000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3.9㎡형	8인기준	"	80,000	150,000	
	114.2㎡형	15인기준	"	100,000	200,000	
산림문화 휴양관	69.3㎡형	10인기준	1일/1실	70,000	140,000	

가. “성수기 및 주말”이라 함은 7. 15일 ~ 8. 24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한다.

나.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다. 예약 후(예약한 날 포함) 5일내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 자동 예약 취소

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한 경우는 사용일까지 미 입금시 자동 예약 취소하고  
입금 후 취소시에는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기타시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세미나실	103㎡	1회/4시간	6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500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이용자는 주차장 사용료 면제
	중·소형자동차		3,000	
	대형 자동차		5,000	

가. 숙박시설 이용시 세미나실 사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나. 경형 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가 이에 해당되며, 대형자동차는 24인 이상 승합차와 2톤 이상 화물자동차가 이에 해당된다.

다. 고령군민은 주민등록확인 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미승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  
(제7조제2항관련)**

구 분	반 환 및 배 상 기 준
<p>1. 관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기준 : 사용예정일]</p>	<p><b>【 성수기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환불</li> <li>○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90%환불</li> <li>○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80%환불</li> <li>○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50%환불</li> <li>○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 환불 안 됨</li> </ul> <p><b>【 비수기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환불</li> <li>○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90%환불</li> <li>○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80%환불</li> <li>○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 시설사용료 80%환불</li> </ul>
<p>2. 고령군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기준 : 사용예정일]</p>	<p><b>【 성수기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li> <li>○ 7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배상</li> <li>○ 3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li> <li>○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50%배상</li> </ul> <p><b>【 비수기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3일전에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li> <li>○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배상</li> <li>○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시설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배상</li> </ul>
<p>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기준 : 사용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취소시점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li> </ul>

# 미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자연휴양림 고령군 직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 ※ 인건비(관리인력), 운영비(각종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
- 관리·운영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발생
- 관리·운영조례(안) 제10조 수입금의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처리

###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리운영주체 : 고령군 직접운영
- 비용추계기간 : 2013년 ~ 2017년
- 미승산 자연휴양림 경제성분석 연구보고서(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연구용역기간 : 2012. 02. 15 ~ 2012. 03. 15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세입	○ 사용료	157,874	159,586	161,442	163,297	165,152	807,351
	소계(a)	157,874	159,586	161,442	163,297	165,152	807,351
세출	○ 인건비	91,728	95,203	99,297	103,567	108,020	497,815
	○ 운영비	98,636	101,792	105,050	108,411	111,880	525,769
	소계(b)	189,914	196,995	204,347	211,978	219,900	1,023,134
□ 총 비용(a-b)		-32,040	-37,409	-42,905	-48,681	-54,748	-215,783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구분	국비(인건비)	10,953	11,424	11,916	12,428	12,962	59,683
도비	일반회계(인건비)	2,191	2,285	2,383	2,486	2,592	11,937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군비(인건비,운영비)	176,770	183,286	190,048	197,064	204,346	951,514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89,914	196,995	204,347	211,978	219,900	1,023,134

#### 5. 부대의견

- 자연휴양림 1차사업의 숙박동수(5동/7실) 운영만으로는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민간위탁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 2차사업을 통한 숙박시설의 확충과 야영장 운영이 연계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함
- 손익분석(2차 조성사업 완료 기준)

(단위: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익	258,181,950	264,412,200	267,651,930	270,891,660
비용	196,995,500	204,346,595	211,977,957	219,900,489
순이익	61,186,450	60,065,605	55,673,973	50,991,171

- 제한적인 범위의 민간위탁(객실관리 및 세탁)용역은 가능함